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강경숙 · 김대식
김동아 · 김문수 · 김용태
박정현 · 박희승 · 안태준
염태영 · 정준호 · 조계원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 · 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,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· 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,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 · 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및

제9조의3).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, “운영”을 “운영, 제4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”으로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법률 제20789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3의 제목 중 “오남용”을 “오남용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오남용”을 “오남용,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”으로,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을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을 각각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”으로, “오남용”을 “오남용, 사행

행위 및 도박 중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을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보건교육”을 “보건교육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마약중독예방교육에”를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을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마약중독 예방교육”을 각각 “마약중독등예방교육”으로, “시기·방법”을 “시기·대상·횟수·방법·점검 및 평가”로 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등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등예방교육이 학생의 건강 증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마약중독등예방교육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20789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중독등예방교육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 증진 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</u>
<u>② (생략)</u> <u><신 설></u>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<u>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
<u>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</u>	<u>⑤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제3항에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운영, 제4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</u>

위탁할 수 있다.

법률 제20789호 학교보건법
일부개정법률

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
예방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매
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
협의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
마약류에 대한 중독·오남용
예방교육 추진계획(이하 “마약
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”이라
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
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
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
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
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
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(이
하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이라 한
다)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약중독
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
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이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--

법률 제20789호 학교보건법
일부개정법률

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
등 예방교육) ① -----

-----오남용, 사
행행위 및 도박 중독---마약중
독등예방교육-----
-----.

② -----마
약중독등예방교육-----

-----오남용, 사행행위 및 도박
중독-----마약중독등예방교
육-----
-. -----마약중독등예방교
육-----
-----.

1.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

2. 3. (생략)

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·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

1. -----보건교육 및
정신건강 증진 교육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마약중독등예방교육-----

-----.

④ -----마약중독등예방교육-----

-----.

⑤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등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등예방교육이 학생의 건강 증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⑦ 마약중독등예방교육-----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<u>만</u> <u>약중독예방교육</u> 의 실시 <u>시기</u> · <u>방법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<u>만</u> <u>약중독등예방교육</u> ----- <u>시기</u> · <u>대상</u> · <u>횟수</u> · <u>방법</u> · <u>점검</u> 및 <u>평</u> <u>가</u> -----.
---	--